

2017회계연도

# 예산 전용사항 보고

2017. 11. 28.

재 무 국

# 손해배상소송 일부패소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

## □ 소송 개요

- 사 건 명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09002 손해배상
  - 우리시에서 원고에게 2013년, 2015년에 총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하였고 이후 원고가 건물 신축중 매입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, 우리시를 상대로 처리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소 제기('16.9.6)
- 소송가액 : 64,681,600원
- 결과(1심) : 우리시에 하자담보책임 있음으로 일부 패소  
(원고 80% 승, 피고 20% 승)
- 소 확정일 : '17. 10. 13.

## □ 판결금 지급

- 지 급 액 : 금56,189,700원(①+②)
  - ① 배 상 금 : 51,745,280원
  - ② 지연이자 : 4,444,422원
- 전용 내역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 현액	변경요구액		변경후 예산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	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	공 유 재 산 관리 및 운영	일반운영비 (201)	사무관리비 (01)	605,748	-	56,190	549,558
			배상금등 (305)	배상금등 (01)	-	56,190	-	56,190

- 예산전용 사유 :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관련 판례(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) 등에 비추어 항소하여도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,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신속히 지급하여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하고자 함